

플랫폼 시대 공공거버넌스 미래인재양성사업팀 운영 규정

2021. 3. 1 제정

2021. 4. 1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의 미래인재 양성사업 유형에 해당되며, '플랫폼 시대 공공거버넌스 미래인재양성사업팀'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플랫폼 시대 공공거버넌스 미래인재양성사업팀(이하 '사업팀'이라 한다)의 조직구성과 사업추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목표) 본 교육연구단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의 우수한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연구 경쟁력 강화
2. 우수한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양성
3.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
4. 국가·지역사회의 필요 분야 연구인력 양성

제4조(사업기간) ①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,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.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,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말까지로 한다.

제2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

제5조(참여인력)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과의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운영조직) ① 사업팀의 업무 수월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교육연구부(교육부, 연구부, 국제부, 기획부 등)를 둔다.

② 실무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
1. 교육부는 교과과정 운영 및 개편, 참여대학원생 교육, 연차보고서 작성 등
2. 연구부는 연구성과 관리, 연구발표 워크숍 등

3. 국제부는 국제협력, 국제심포지움 개최,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
4. 기획부는 발전계획 수립, 예산 및 결산, 홍보, 산학협력 등

제3장 사업팀장

제7조(권한 및 책임) ① 『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리운영 지침』에 근거하여 사업팀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다.

② 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의 총괄 수행
3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
5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
제8조(변경) ① 사업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팀장을 변경하며,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1년을 초과하는 국내 연구년
2.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파견
3. 1년을 초과하는 국외체류(연구활동, 장기출장)
4. 휴직·이직·퇴직·사망·참여제한

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팀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팀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1년 이내의 국내 연구년
2.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파견(대리체제로 운영)
3.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활동(대리체제로 운영)

제4장 참여교수

제9조(자격) ①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(이하 '참여교수'라고 한다.)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소속으로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의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.

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에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인 상황에는 사업팀장 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팀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참여교수가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파견, 휴직·이직·퇴직·사망·참여제한시 사업팀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0조(변경) ① 사업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, 사업 신청 시를 기준(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)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

② 참여교수 변경에 있어 사업팀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,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장 참여대학원생

제11조(자격)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소속으로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
 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및 수료생
- ② 수료생은 참여대학원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수료후 등록을 하여야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.
- ③ 외국인 대학원생은 연구과제의 참여,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여야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.
- ④ 참여대학원생은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.
1.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 2.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 3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
 4.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강사 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
- ⑤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확인을 위하여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전일제 확인을 위하여 대학원생지원비를 3월과 9월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 다만,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(2021. 4. 1 개정)

제12조(지원) 사업비에서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 장학금(지원대학원생에 한정), 우수논문장려금, 학술대회 수상 장려금,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 장학금)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사업팀장이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②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원 이상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원 이상
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원 이상

제6장 신진연구인력

제14조(채용) ①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(이하 '신진연구인력'이라 한다)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충북대학교의 교원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.

② 박사후과정생(리서치 펠로우를 포함)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사후과정생은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.
2.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2. 계약교수는 사업팀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(8차년도는 6개월 이상)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원) 사업비에서 인건비, 우수논문장려금,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인건비)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)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
1.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/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퇴직 시 지급한다.

※ 월 지급 기준액(300만원)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6.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2.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,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운영위원회

제17조(목적) 사업팀의 사업계획, 예산편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8조(구성)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 사업팀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8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19조(목적) 사업팀의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, 교육·연구·국제협력·산학협동사업의 연차별 성과, 기타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제20조(구성)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팀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하로 구성하고, 위원장(사업팀장) 및 외부위원(지자체, 산업체, 외부 대학, 연구소 소속 등의 전문 인력)으로 구성한다.

제9장 사업비

제21조(예산편성) ① 사업비는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행정요원이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지출한다.

1. 대학원생 지원비
2. 신진연구인력 지원비
3.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
4. 교육과정개발비
5.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
4. 국제화 경비
5. 교육연구단 운영비
6. 간접비

③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별표1 「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」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비는 사업비의 50% 이상, 사업팀 운영비는 10% 이내(또는 5,000만원), 간접비 5%를 준수한다.

제22조(사업비 집행) ① 사업비 집행은 별표2 「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」에 따라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다.

② 대학원생 지원비는 연구 장학금, 우수논문 장려금, 학술대회 수상 장려금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는 인건비, 우수논문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교육과정개발비는 학기마다 참여교수를 선정하여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⑥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,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용(일회성 참가비에 한함), 회의비, 일반수용비,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⑦ 국제화경비는 해외학회 참가, 해외 인턴십, 해외학자 초청, 해외 장·단기연수 경비,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⑧ 사업팀 운영비는 인건비(행정요원), 성과급(참여교수)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일반수용비, 회의 및 행사 개최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⑨ 간접비는 행정직원 지원, 사무용 집기 구입, 각종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23조(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) 사업팀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제24조(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) 사업팀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1.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(성명, 성별, 소속 학교 및 학과, 연구자번호,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)
2.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
3.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
4. 산학간 인적·물적 교류 실적
5. 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 등 사업비 운용 현황
6. 사업비집행계획서, 사업팀 자체평가보고서, 연차·중간·최종보고서
7.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
8.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장 기타

제25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, 한국연구재단(BK21사업팀)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, 한국연구재단(BK21사업팀)의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, 충북대학교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6조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